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3. 24.(금) 10: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9차, 제11차, 제13차, 제1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3월 22일에 있었던 제1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17-16-10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제이티비씨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0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 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22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와 20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 3월 19일 3개사가 지난번 재승인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9월 24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하였고, ‘16년 8월 11일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9월 30일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10월 21일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5일간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그 심사기간 중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6일 (주)조선방송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3월 10일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22일 (주)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심사위원회 이후 '17년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 등 총 13명입니다. 자세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17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5일간이었고, 상세한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주)제이티비씨는 731.39점, (주)채널에이는 661.91점을 획득하고 과락 항목이 없었습니다. 한편, (주)조선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습니다. 방송사업자별 상세한 심사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소견입니다. 종편PP는 '11년 최초 승인 이후 도입 5년이 지나면서 3개 채널이 공히 시청률 향상 및 매출액 증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내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편성, 제작 투자 등에서 신청법인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별로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었으나,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음. 다만,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시청자의 불편리를 우선시하여 재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향후 종편PP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입니다. 다음 사업자별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보도 편중이 심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보도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주)제이티비씨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사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되며, 콘텐츠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볼 때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비교적 많고 관련 이행실적도 저조하지만 향후의 실행계획은 평가할만하다,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갖는 시사논평 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중이 심하므로 관련 장르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 실적이 '14년 재승인 계획의 80% 가량에 불과하고 절대금액도 많지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여 실천이 담보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조선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은 '17년 3월 22일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주)조선방송 및 최대액출자자의 청문 시 의견 진술 주요 내용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축소와 조화로운 편성, 진행자·출연자 관리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콘텐츠 투자 확대 등 개선사항을 담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올해를 (주)조선방송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주)조선방송은 방송평가에서 328.53점을 받았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 기타 심사사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세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실행 사항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문을 통하여 공적 책임과 공공성·공정성 분야에서 향후 개선을 위한 사업자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방송출연자 관리제도 개편과 일진아웃제 등의 조치 등으로 법정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근본 방지를 위한 대책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임. 세 번째, 콘텐츠 투자 규모는 기존 계획 대비 연간 200억원 이상 투자 금액을 늘리는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존 승인 과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 펀드 1,000억원 조성도 기존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18년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개선계획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 계획이 기간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네 번째, '11년 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이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4년 재승인 당시 부가한 조건도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행을 수행할지는 불투명함. 보다 구체적인 효율성 있는 담보를 위해 이에 따른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의 관리감독과 실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제이티비씨와 (주)채널에이는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도 부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이티비씨 주요 재승인 조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1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지난 3년 중 최소 법정제재 건수(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단, '1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둘째,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셋째,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주)채널에이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은 첫 번째 법정제재 건수는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34% 이내로 편성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계획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제이티비씨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주)채널에이는 4월 22일에서 '20년 4월 2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입니다. 먼저 법정제재 건수는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을 출연정지 조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이 함께 부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계획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승인유효기간은 향후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채널에이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시점을 일치시켜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3월 말에 승인장을 교부하고,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한 것 같은데 <붙임>에 들어가 있는 재승인 조건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약에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읽어 주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자별로 재승인 조건의 문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선방송에 대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선방송이 두 번째 추가계획에 낸 것이니까 그것을 읽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즉 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1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추가개선계획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을 많이 담아서 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점검해야 할 내용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3페이지를 보면 개선계획에 향후 5년간 보도분야 평균 비율을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32.7%에서 28%로 줄이고,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 4개 장르 평균비율을 39.7%에서 32.6%로 축소한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하나 조금 이견인지, 아니면 정리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페이지에 조선방송 주요 재승인 조건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쪽 있지 않습니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것이 이 본문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사업자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장에 넣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안전에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승인장에는 포함해서 사업자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붙임>에 있는 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그 뒤에 그 내용 그대로 첨부한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첨부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을 하는데 조건을 부가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650점을 넘었을 때는 재승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심사계획에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조건부 재승인과 650점을 넘어서 재승인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과는 케이스가 다른 것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법적인 의미가....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다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데 이 안전에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TV조선과 채널A가 그냥 똑같이 재승인인데 조건부를 붙이는 것처럼 조건부 재승인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결주문 2페이지에 보면 기간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명시되어 있는데 JTBC의 경우는 올해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다른 2개 종편사는 통상 3년인데 JTBC는 3년 8개월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8개월을 더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센티브, 말하자면 상여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의결안건 8페이지에 마지막 동그라미 위에 문단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른 차별을 두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점을 우리가 명확히 한다고 할까, 알아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내용을 보면 JTBC,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에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사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콘텐츠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볼 때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종편에 비해서 심사위원회 의견이 월등하고, 총점이 731점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최저점을 받은 다른 종편에 비해 몇 점을 더 받은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70점 정도 높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10점입니다. 110점 가까이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 그리고 65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정책상 또 종편에 대해서 국민 여론층에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시민사회에서 학계에서 지금까지 우리도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계획할 것이냐?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이지요? 방송평가와 재승인 심사, 재허가 심사입니다. 그러면 재승인 심사할 때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 목표, 우리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모범적으로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으면 인센티브 상을 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역행하면 그것은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책수단이 분명해야 방송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JTBC에 대해서 총점 731점 이상 받은 종편에 대해서 인센티브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3년 8개월, 8개월 더 주는 것은 인센티브 포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회의 의견서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TV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650점 넘어서 재승인해 주는데 조건을 부가하는 것과 조건부 재승인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까지 한 것은 불허를 염두에 두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어간에 TV조선 쪽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가개선계획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개선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혔고, 그것을 한번 기회를 주어서 이행하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부가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키지 않을 경우에 취할 법적 절차가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속력 있게 재승인 조건부 안에 집어넣든지 의결주문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만 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구속력이 조금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승인 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승인 조건으로 이런 내용을 넣을 방법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별첨으로 가는데 그 밑에 그런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승인장에 명기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양해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종편 심사 결과 최종 의결하면서 저는 방통위원 전원 합의안으로 만드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매우 드물게 전원 합의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어간에 정말 외부에서 여러 연락을 받았고, 또 토의도 했는데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공통분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편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문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보낸 것이 아니고 종편 3사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종편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 평가했고, 그리고 3사 종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부와 권고사항을 넣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편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 여론층과 시청자들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정말 우려해 왔고 걱정을 많이 했고 지적을 많이 해 주

했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면서도 그 어간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들, 우려들을 염두에 두고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종편 4사가 진입규제를 별로 받지 않고 도입·허가된 데 대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송광고시장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고려했는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퇴출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전제해서 “4개 너무 많지 않다. 그냥 허가해 주면 나중에 시장논리에 따라서 자연도태, 퇴출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 정책당국 지금 와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것은 “똑같은 경향을 가진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도편성이 너무 과다하다, 보도분야 편성이 50% 넘는 데도 있었고 “그것을 줄여라, 줄여라” 계속 지적하니까 교양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40% 안팎으로 줄이고, 그런 많은 문제점을 시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문까지 간다는 것이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시다만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종편을 줄여 달라, 말하자면 한두 개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심사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재승인 심사, 재승인장을 줄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의견제시 연락으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안건은 정말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지고 전원 임기만료로 떠나갑시다만 추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편이 정말 명실상부한 종합편성방송으로서 우리의 방송문화와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마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항상 이렇게 조건을 부가하게 되면 나중에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방송의 재승인장 하단으로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조선방송의 재승인 조건 여덟 번째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실적 점검입니다. 즉,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를 지키라는 것과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 비율 준수, 투자계획 이행, 이것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는 6개월 단위로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이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지요? 8번에….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 <4>, <5>, <6>번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2>, <4>, <5>, <6>에 붙어 있는 것이고, <2>, <4>, <5>, <6>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바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정명령이 나가고, 시정명령이 한 차례 나가면 그 이후, 내년부터가 되겠지요.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향후 2년 동안은 무조건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번 시정명령 받게 되면 나머지 승인유효기간 동안은 매 6개월 단위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혼선 없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위반된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이행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나간 다음에 또 동일한 사안으로 위반했을 경우, 즉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 시정명령 나가는 것은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영업정지 그다음에 승인 취소로 가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길고 긴 재승인 심사가 끝나고 의결의 순간이 왔는데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품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종편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너무 방송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시청자 의견이 32,000여건 접수됐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떤 방송사가 더 우수하고 또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종편방송은 초창기 신생 방송사를 벗어나서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의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안정기, 도약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아무나 출연시켜서 그야말로 싸구려방송, 막말방송, 오보방송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서로 자 극적인 언사를 써 가며 시청률과 수익성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말 교만한 방송은 그만하시고 그야말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겸손한 방송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몫으로 남겨주고 방송은 팩트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마치 편드는 그런 편향하는 인상을 주는 방송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송이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 3사에 모두 공통적으로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강력하게 붙였습니다. 그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 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그야말로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 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편들이 거의 뉴스 편중이 너무 심해서, 보도부문 편중이 심해서 보도전문채널과 뭐가 다를 것인가 하는 시청자들의 질타를 어느 방송사든 마찬가지 다 받았습니다. 특히 어떤 방송은 시사논평, 대담·토론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메인 뉴스에서 너무 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뉴스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국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재승인해 주면서 각 종편사업자들이 그런 점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 재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특히 TV조선이 점수를 낮게 받아서 퇴출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만 추가개선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만 방송해 준다면 어떤 종편방송보다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구노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편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격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어떤 편향성을 갖지 않는, 그래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팩트만 충실히 전하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가장 충실한 방송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심사했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JTBC 재승인 유효기간이 '20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MBN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시점과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상 맞춘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그 앞에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렇게 해 놓고 유효기간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채널A와 조선방송은 만료시점을 같이 하고, JTBC와 MBN의 만료시점을 같이 하기 위해서 JTBC의 재승인 유효기만 종기를 '20년 11월 30일로 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심사를 할 때 1개 사업자보다는 복수사업자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거기다가 참고표시를 하든지 해서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언제다라고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저도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편 3사 지난 6년간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했지만 저는 일반 국민들의 불평·불만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에 맞춰서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방통위가 해야 한다고 일찍이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든가 보도 프로그램에 편중된 것이라든가 콘텐츠 투자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완전히 바로 잡기 위해서 심사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우리 방통위의 그러한 의지가 담기도록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심사위원들도 그랬지만 저희 방통위 사무처 그리고 방통위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희가 다뤘던 안건 중에서 가장 진중하고 신중하고 장기간 심층적으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듀프로세스(Due Process)를 의견청취나 청문 절차까지 다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편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앞으로는 과거 6년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각 사별로 부여한 재승인 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편 3사와 방통위의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종편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특혜 의혹과 사회적 논란 끝에 탄생한 종편이 방송을 시작한지 횡수로 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재승인 심사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처럼 종편 출범 초기 우려와 달리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JTBC의 경우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종합소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편PP의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한다’ 즉, JTBC가 타 사업자에 비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PP 정책과 심사 기준에 가장 부합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특정 사업자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심사위원회 종합소건 TV조선에 대해서는 시사토크 등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잘하는 사업자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4일 심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딱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특히 TV조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TV조선은 재승인 점수인 65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25점을 얻었습니다. 지난 연말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불허 청문회 이후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OBS의 632점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조건을

불허 재승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6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서 의견을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해 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재승인 심사제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OBS와 마찬가지로 재승인 불허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정도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PP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한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승인 심사처럼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꾸리고 엄격하게 심사했다면 그때 당시에 재승인받았을 종편이 몇 개나 있을까, 저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건이라도 제대로 부가했다면 과도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저는 동의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 했고 지난 3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TV조선의 개선계획과 의지 또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앞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총 32,000여건의 시청자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의견 중 95%가 종편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맞지요? 이렇게 봐도 되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95% 이상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 재승인 취소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와 방통위원들의 의견, 판단 이전에 시청자들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보수와 진보,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라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절대 다수의 시청자들이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방통위원회는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선출직에만 해당되는 책무가 아닙니다. 행정부의 정무직 또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라면 권한 행사의 기준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승인 불허에 해당하는 625점을 획득한 TV조선과 661점을 획득한 채널A, 그리고 TV조선에 비해 106점 높은 731점을 획득한 JTBC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재승인을 해 준다면 재승인 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재승인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방통위원회가 법의 취지를 스스로 경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TV조선을 재승인했을 경우와 재승인을 불허했을 때의 사회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존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TV조선 재승인 불허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TV조선에 대한 마지막 청문 때까지 유지했던 입장입니다. 최종 의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밝힌 대로 변함은 없습니다. 소신 또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이 함께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하여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특정 위원 소신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견일치가 안 되면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편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저희 5명의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숙고를 거쳐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TV조선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청문을 통해서 재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 청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자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TV조선은 의견청취와 청문회에서 밝힌 그러한 개선계획 그리고 개선의지를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TV조선 경영진과 최다주주의 개선계획 그리고 그 의지, 외부전문가 최종 청문에서 정리된 입장,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일단 저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TV조선에 대해 재승인 불허라는 개인 입장이 끝내 반영 안 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이견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논의과정을 존중하여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적극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합의된 내용의 의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편 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TV조선의 추가개선계획은 정부와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사업승인의 의무 조건입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재승인을 받는 종편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공적 사업자로서 사업계획서나 재승인 조건, 이러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책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또 승인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종편PP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던 방송정책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TFT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재승인이 아니고 종편이 원래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종편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많은 시청자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방안, 개선방안으로 그것들을 조건에 담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따라서 과거에 어떤 재허가·재승인에도 없었던 이런 조건들이 이번에 부과됐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하라는 조건은 최초의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종편 3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4건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어느 종편의 경우에는 이미 그 엇비슷하게 쪽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법정제재가 많았던 종편으로서는 그것을 4건으로 줄이는 것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로이 출발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했던 계획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 종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의 그 모든 근원은 종편이 보도 위주로 방송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승인 계획에서 제출한 보도비율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하는 것을 따질 때 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보도로 분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고 그와 같이 보도와 교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송사들이 분류해 온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교양이 아

나라 보도로 느끼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도 교양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실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합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신 대로 방송프로그램 장르를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대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등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중에서 방송법상 보도로 분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보도와 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여지가 있는 것들을 모두 묶어서 그것을 보도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 전체를 묶은 것의 비율을 줄여야지만 실질적으로 종합편성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에서 뉴스와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을 다 묶어서 소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34% 이내로 하라는 조건이 부가가 됐고, 또 다른 2개 종편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 비율을 33%라든지 또는 32.58% 등으로 실제 34%보다 낮게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되어 있는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특해 보이고 좀 과도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종편이 제대로 된 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콘텐츠 투자에 있어서도 과거적으로 높아진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지난 2014년에 재승인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면서 시정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재승인 기간 3년이 다 지나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절차는 밟아가되, 즉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3개월, 그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동안 또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을 때는 승인 취소, 이 절차를 밟아 가는데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TV조선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또 1년 단위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 또 재승인 기간이 다 만료되어서 사실상 이 조건이행을 못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재승인 심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특이하게 재승인 조건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2>, <4>, <5>, <6>번의 조건이 준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조건을 준수한다는, 이것도 역시 한 번도 이런 조건이 부과된 적이 없는 새로운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그 이행이 철저히 점검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정지와 승인 취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절차적인 내용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종편이 다시 새로이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왔던 것들이 개선되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7-16-10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제이티비씨미디어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 (주)미디어랩에이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한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한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재허가 신청한 (주)제이티비씨미디어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 (주)미디어랩에이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등 5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법률요건 심사,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신청법인 및 최다주주 의견청취, 심사의견서 건의 등이며, '17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법률요건 심사결과 재허가 신청법인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량 및 비계량 평가결과 재허가 신청법인은 100점 만점 기준 총점이 (주)제이티비씨미디어컴 82.375점,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 77.048점, (주)미디어랩에이 76.245점이고,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을 획득하여 모두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업자별 세부 심사결과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재허가 심사결과 (주)제이티비씨미디어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 (주)미디어랩에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송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허가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방송광고 판매를 조건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방송사업자의 이행 의지를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 등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규모, 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청법인별 심사의견입니다. 제이티비씨미디어컴에 대해서는 광고판매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 투자 확대에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예상되지만 프로그램 경쟁력에 기반한 광고매출 증가 노력 등 경영진 및 최다주주의 의지가 높아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티브이조선미디어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광고판매 계획을 적극적 판매 전략 수립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감사제도·업무지침 및 윤리강령 등을 보완해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협찬대행 매출이 지나치게 높아 광고영업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으므로 방송사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미디어랩에이는 과거 3년간 판매계획 대비 실적 달성비율이 저조하고 향후 판매계획도 과학적인 계획과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시장전망에 기초해 판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건의사항으로 방송사와 미디어랩사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편PP의 협찬 판매

방식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사업은 종편 미디어랩사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검토 의견입니다.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법령 및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제이티비씨미디어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 (주)미디어랩에이 등 재허가 신청 3개 법인 모두 재허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각 5년으로 해서 (주)제이티비씨미디어컴과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은 '17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주)미디어랩에이는 '17년 4월 22일부터 '22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고 향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결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입니다. 재허가 3사 공통 재허가 조건입니다. 첫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것이며, 이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각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둘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반기별 이행 실적을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미디어 환경 및 광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사업의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및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 권고사항입니다. 공익광고 제작, 광고 관련 조사·연구 등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간 공동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별 재허가 조건입니다. 티브이조선미디어랩, 미디어랩에이는 합리적 광고시장 전망과 적극적인 판매 전략에 기반한 광고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티브이조선미디어랩은 독립적인 감사인 임명 등 감사제도 개선, 업무지침 및 윤리강화 교육 강화 등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성을 확보할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권고사항입니다. 티브이조선미디어랩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방송광고와 협찬 판매대행 영업의 분리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역할 구분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 3월 중 재허가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허가가 만료되는 (주)엠비엔미디어랩에 대해서 5월 말에 재허가 심사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재허가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종편미디어랩은 제일 문제의 핵심이 6페이지 두 번째 ‘공동 재허가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편과 종편미디어랩 간의 부당한 경영간섭 방지’, 그리고 ‘방송광고 특히 협찬 등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허가 조건으로 넣은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허가 조건으로는 넣었지만 미디어랩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심사위원들이 정책건의사항에 넣은 것처럼 지금 현행 법·제도가 이런 문제를 전부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일정에 법·제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와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향후 일정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는 오늘 말하고 끝인데 여기에 넣어서 앞으로 법·제도 정비가 꼭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향후 일정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안건과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편미디어랩에 관해서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심사위원회에서 새삼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종편미디어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어랩법에 있는 그런 금지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다 제대로 금지행위로 포섭하고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방송광고정책과에서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서 법과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향후 계획에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올해 내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법, 시행령 개정안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넣도록 하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달 더 있으니까 잘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체사와 매체광고를 대행하는 미디어랩 간 연계지요. 광고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고판매만 대행하라는 것입니다. 보도를 가지고서 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행각서로 되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2년 전에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저희도 조사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물론 명확히 법적으로 우리가 금지행위 위반이냐, 아니냐 해서 잠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행각서만 징구해서 될 것이냐, 왜 이것은 이행계획은 요구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광고조직이나 인력의 분리·운영, 그리고 미디어랩 직원들의 방송사 편성회의 참석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은 왜 요구하지 않지요?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1>번에 대한 부분은 랩사와 종편 매체사인 종편에 부과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2>번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랩사로부터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이행실적을 1년이 아닌 반기별로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1>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언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은 방통위의 그간 지적 부분이나 외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최다주주까지, 사실 이 금지행위는 랩사에만 부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다주주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을 이행각서로 저희가 담보받고 이것을 재허가 조건에 부과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서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심사위원회 정책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협찬제도 정비하도록 하는 것,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2015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연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편법적 광고영업, 협찬, 간접광고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때 당시에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그때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규정들을 과도하게 상위 입법화할 경우는 운용상 경직성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협찬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과장님, 그렇지요? 뭐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찬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었고, 협찬 규칙에는 그것과 관련된 조문을 두게 해서 개정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법에 협찬과 관련된 근거를 만들거나 그것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만드는 것은 보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 이 안건 논의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대한 제도개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 이 정도 잘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 안 하면 미디어랩의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실 것이지요?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미디어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 전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아까 그 계획을 진행하면서 다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실정도 어느 미디어랩은 광고와 협찬을 같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어디는 협찬은 종편이 하고 있고 미디어랩은 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다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공정경쟁이라든지 또는 광고주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금지행위로 옮겼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계속 검토해서 올해 안에 개선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함) 재원 항목 추가, 이하 KBS라고 합니다. KBS의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고 함)에 대한 송신지원 범위 구체화, 공익채널의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 현행법령상 제반 제도 정비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S의 재원 항목 추가 관련입니다. UHD 투자비용·광고수입 급감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KBS가 자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부동산 활용 사업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공영방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이사회 심의·의결, 방통위 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9호에 ‘부동산 활용 사업에 따른 수입’을 신설하고 사업 요건을 건축물의 노후화·손상 등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KBS 이사회가 부동산 활용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때 사업의 목적과 운영방식,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사업에 따른 수입금 사용 용도가 공사의 공적책임 및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KBS가 방통위에 사업계

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사업에 따른 수입금 사용 실적을 결산서에 포함하여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시행령 개정안의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EBS에 대한 송신지원 범위 구체화입니다. 현행 방송법 제54조제1항제6호는 KBS의 업무에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는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KBS가 EBS에 대하여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및 UHD 도입 등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증가로 '송신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양사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의 제정 취지와 그간 KBS가 동법 제54조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EBS의 송신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관례를 고려해서 비용부담 일체를 KBS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송신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향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EBS에 지원되는 수신료 비율을 현행 '3%'에서 '3% 내지 5%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익채널의 안정적 사업구축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1년 유효기간은 공익채널 선정사업자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기에 부족하고 채널송출이 불확실해서 충성도 높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방통위가 공익채널 선정절차, 기준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채널선정 심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채널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 당시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종전의 기간으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보공개 의무화 대상 방송사업자에 홈쇼핑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어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홈쇼핑사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의 근거 규정인 시행령 제56조에 홈쇼핑사업자를 그 대상 사업자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홈쇼핑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를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광고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이익저해 방지 및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관련 3개 사업을 수행 중이나, 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1>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사업, <2> 방송 및 방송법 방송광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관련 사업, <3>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3월에서 4월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5월에서 6월까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견을 듣고 의결하고, 7월부터 8월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우선 논의가 아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KBS 자산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포함된 안건은 저는 상정과 논의를 반대합니다. 동 조항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하지 않았습시다만 위원들 간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또 여전히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전제로 한 안건 상정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시간을 갖고 위원들 간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위원회와 KBS간 협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위원장님과 저는 박근혜 정부의 방송분야의 유일한 대선 공약인 K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없이 수신료 인상 등 재원 문제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KBS가 자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도 당연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KBS가 보도의 공공성, 경영의 공영성 논의와 분리할 목적으로 수신료 인상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이 포함된 오늘 시행령 개정안 상정과 논의를 중단해 주시고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전체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사가 특히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종편들의 등장으로 수익구조도 매우 악화되어 있다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자구적인 수단으로 자구책을 내서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공영방송이 콘텐츠 질을 더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자구노력은 우리가 지원을 오히려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영방송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KBS 이사회가 이것을 결정하도록,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독립적으로 이사회가 다 컨트롤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KBS가 좀 더 나은 방송으로 나가기 위해서 수신료도 35년간 동결되어 있고, 또 정부 지원도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 공영방송도 다 그런 식으로 자산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뒷부분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EBS 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EBS 문제도 그렇습니다. KBS와 EBS 양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간의 협의가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일방의 KBS에 책임을 다 전가시켜서 '전액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없고,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 늘려서 시청료 배분율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 방통위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송개혁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100분의 3이라는 숫자를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로 시청료를 배분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5%로 늘린다는 것은 좀 더 재고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안건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입장을 저는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이 저희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다시피 하는데,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있어 왔지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기회는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재원 문제만 다루는 이 건을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안건 상정과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함께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공영방송 KBS의 재원 문제입니다. 매우 어려운 줄 다들 알고 있고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정상화라고 할까 충당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수신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신료가 동결된 지 오래 됐다고 해서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수신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들의 의사 존중입니다. 시청자들의 의사 존중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선행과제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송 외 수익사업, 부대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시청자들의 아까 말씀하신 의사 존중과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선행과제로 해결한 뒤에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보완적으로 다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KBS 수신료 인상의 선행과제는 KBS 바깥의 국민 여론층, 시청자,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 1단계로 KBS 내부의 구성원끼리라도 공정성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만들면 1단계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시청자들의 요구를 소화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단계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면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제 의견을 일찍이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KBS 측은 아무런 수신료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버려두고 부동산 활용과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합의하기 어려운 안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이미 임기가 내일모레 만료되는 제3기로서는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회로 넘겨서 충분히 토의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세 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크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핵심은 지금 EBS가 UHD 방송 준비 내지 개시를 해야 하는데 KBS의 EBS에 대한 송신 지원과 관련해서 양사 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방통위에서 이것을 가만 보고 있을 것이냐? 저는 시행령을 구체화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긴급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KBS 재원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부대사업으로서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업 내지 그 수입은 어떤 공공기관도 다 항목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달리 시행령 개정안의 포인트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고 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이견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논의하셔서 하루빨리 결론을 도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엽적인 것이지만 고삼석 위원님께서 KBS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습시다. 그것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 상임위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논의하고, 또 주장을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는 절차 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신료로 수입을 더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꼭 우선순위가 수신료가 먼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KBS가 나름대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해 온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EBS의 UHD 송신 지원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논의도 그렇고 오늘 또 위원

님들의 이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많이 나고, 그 간격이 커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해서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송정책국에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고생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건은 오늘 보고안건으로는 접수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논의해 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이 금년 3월 23일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과 관련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사항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즉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기는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앱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으로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 고지 내용, 고지 방법 및 절차, 운영체제별 동의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고, 운영체제 공급자의 준수사항으로는 동의 기능 및 동의·철회 기능을 제공하고, 접근권한 운영 기준의 공개 및 보안조치를, 스마트폰 제조업자는 스마트폰에 동의·철회 방법이 적절하게 구현된 운영체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는 스마트폰과 운영체제의 개발 환경에 맞게 앱 제작·공급 시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방법을 구현하여야 하고, 앱 마켓 사업자는 접근권한의 고지 공간 제공, 접근권한 검수 절차 운영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대상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 통제 방법을 상세히 안내·설명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앱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로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이미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해 접근권한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근권한 관련 시스템 기능의 수정·보완 등 변경 일정을 고려해서 금년 6월까지의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내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제작·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자 및 앱을 운영하는 정부·공공기관 대상 설명회를 4월 3일경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많이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어떤 때는 ‘해설서’, 어떤 때는 ‘안내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안내서는 해설서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명칭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대한 법령 해설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금 망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내서로 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본인의 접근권한 통제 권한 등을 상세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설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서 안내서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안내서 표지에 보니까 방통위, 행자부, 인터넷진흥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업에 참여한 비중을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제 생각에는 방통위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서 거의 대부분 작업을 했고 작업한 내용을 행자부나 전문가들 한번 의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작업을 다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방통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관련된 법·제도와 달리 많은 특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내서 내용을 보면 지금 보고한 것처럼 스마트폰 앱의 생태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사업자들도 많고 복잡적으로 얽혀 있는데 국민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접근권한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방통위가 국민들의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계도기간을 6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같이 설명회 한다는 것이 있고, 그다

음에 이용자 대상 홍보가 있는데 이 안내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정착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 사업자들이나 공공기관은 이렇게 단체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정책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 대상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대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관련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협력담당관실과 협력을 해서 카드뉴스 형태라든지 블로그뉴스 형태 그리고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용자 본인들이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브로드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사업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 사업자 유형별로 준수할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업자들마다 앱상 아니면 스마트폰상 접근권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필수적 아니면 선택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용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최초에 설치할 때 그리고 앱을 실행할 때 그때에도 고지 안내를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앱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이 문제는 제3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닙니까? 제3기가 거의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또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안내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 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앱에서도 일반 상업적 앱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접근권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홍보를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자체들과 협조한다든가 이런 계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아직 지역에 계신 국민들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여건도 좋고 또 접근권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자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보면 확실히 정보보호 의식이나 또 그런 사업들이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기주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안내서를 만든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또 실행을 하실 예정이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하여간 이용자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껴 왔던 것들을 지금 시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그 어떤 다른 정책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정부 및 공공기관 앱과 관련해서 행자부와 공동으로 만든 안내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수단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앱을 받을 때 왜 이렇게 많은 접근권한에 내가 다 동의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만이어서 실제로 그 앱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거나 또는 그냥 자신의 접근권한을 허용해서 포기하고 사용하거나 이런 선택밖에 없었는데 이 안내서대로, 물론 안내서는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안내서대로 시행된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이용자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안내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김재홍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상임위원님께서 참석하시는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그동안에 방송과 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안건을 온 정성을 다해서 고민하고 논의해 주셨으며 또 바람직한 정책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두 분께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두 분 위원님 이따가 이임식이 있으셔서 이임사 하실 기회는 있는데 지금 소회말씀 간단하게 준비되셨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공식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임기를 마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방송의 공정성, 품격 있는 방송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찰적 디지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어서 건설한 SNS 문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수행이 물론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문화, 지식정보의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증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이 인터넷 강국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수행이 세계 지구촌의 문명생활에도 크게 공헌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3년간 일하면서 조금 잊어버릴 때도 있고 느슨해질 때도 있지 않았나 해서 자성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할 것이고 이런 역할, 이런 공헌을 많이 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공무원 출신이라 주로 부처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오래 근무해서 우리 방통위 같은 합의제 기관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주로 합의제의 비효율성이나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위원으로서 3년 있어 보니까 합의제가 잘만 운영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입장을 다섯 분이 대변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이 합의제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해 간다면 조금 미진한 부분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시고 사회를 맡아주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속기사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 의안·정책관리팀의 김영일 사무관님, 또 팀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너무 수고하셨고, 홍보협력담당관실도 수고하셨고, 제가 방청하시는 기자 분들께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 고삼석 상임위원

- 답사 한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답사하시겠습니까? 답사는 이따가 이임식에서 하셔야 하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가시면 5명이 회의하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또 가신다니 서운함이 앞섭니다. 우리 캐치프레이즈처럼 국민에게 행복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김재홍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방법과 생각이 달라서 의견충돌도 있었습시다만 목표나 취지가 달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의제 위원회라는 것이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자주 회의를 하고 천천히 가냐고 하지만,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진중하게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모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또 결정한 다음에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세를 제가 잘 배웠습니다. 앞으로 또 인생의 후반전 준비하실 텐데 어디서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폐회】